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생산등록번호	농업정책과 -21552
등록일	2026. 9. 23.
결재일	2026. 9. 2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농촌인력지원팀장	농정기획팀장	농업정책과장
이한빈	석양미	대결 2026. 9. 23. 장미혜	전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수요조사 추진계획

< 주 요 내 용 >

2027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수요조사

- 기 간 : 2026. 9. 23.(수) ~ 10. 6.(화) [2주간]
- 유치시기 : 2027. 1 ~ 12월
- 대 상 : 정읍시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내 용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경영체 수요조사
- 고용희망기간 : 8개월(E-8비자)



정 읍 시
[농업정책과]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수요조사 추진계획

- 농업 계절성을 고려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 추진근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I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26. 9. 23.(수) ~ 10. 6.(화) [2주간]
- 조사대상 : 정읍시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조사내용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경영체 조사
- 유치시기 : 2027. 1 ~ 12월
- 유치방법
 - 외국 지자체와 MOU체결을 통한 도입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을 통한 도입
- 고용희망기간 : 최대 8개월(E-8비자)
- 제출서류
 - ①수요조사서(고용농가), ②숙소점검확인서(건축물대장 첨부), ③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고용주 신분증 사본, ⑤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 ⑥가족관계증명서(8세미만자녀, 65세이상 세대원 해당자), ⑦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

II 배정인원

- 배정인원 : 1농가당 연간 최대 12명
 - 배정기준 : 기본 최대 9명(재배면적당 허용인원 확인 - 붙임1 참고)
 -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를 가진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26년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절차 교육에 참석한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 신청 인원에 따라 배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기본계획에 참여하지 아니한 농가**라도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반영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 가능.

단, 고용주는 농업경영체등록, 적정 숙소 구비 등 참여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고용농가 수요조사 실시 후 근로자들의 원활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입국하는 허용 인원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III

신청요건

○ 공통조건

-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가능한 농가
- '27년 최저시급(10,70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가능한 농가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
-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등
- ※ 계절근로자가 초청자(결혼이민자)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 그 외 아래의 고용주 필수 조건 준수 가능한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조건(농가)

- ①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시설 제공 금지**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고용주 집에서 같이 숙식 권장
 -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 ②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구비**
 - 냉·난방 설비 및 온수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 장치가 있을 것
 - 취사도구 및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 ③ **과도한 숙식비 징수금지(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 초과 금지)**
- ④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고용주 부담)**
- ⑤ **최저임금 이상 지급(2027년 기준 10,700원 월 2,2236,300원)**
- ⑥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 휴일 보장**
- ⑦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및 고용변동 미신고 금지(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⑧ **지자체 지시사항 준수 및 관리 철저**

○ 결혼이민자(초청자)

- 초청자격 : 초청일 기준 계속해서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허용인원 : 결혼이민자 1인당 신규추천 최대 10명 이하(연간 누적 기준)
 - ※ 결혼이민자 가족 외의 사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은 '26년 이전에 계절근로자로 참여했던 경우에 지자체가 추천하면 재입국 가능
- 초청범위 : 2촌 이내(배우자 포함) 단, 기존 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 허용
 - ※ 계절근로자 추천 시 유의사항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을 대가로 각종 유·무형의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친척 추천 금지(추후 본국의 가족관계입증서류(번역) 제출)
 - 본국 거주 친척일 경우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불허 될 수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선별·유통·가공이 주 업인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된 법인
-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을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

○ 제외농가

- 동일가구가 이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
- 고용주 필수조건 미충족 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정읍시로부터 주의서를 발부 받고 기간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 ※ 고용주 준수사항 : 붙임3 참고
- 인권침해, 폭력, 성범죄, 임금체불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가 없는 농가
-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무부로부터 벌점이 부여된 경우

- ※ 벌점 20~39점 : 부과일로부터 1년간 배정 제한
- ※ 벌점 40점 이상 : 부과일로부터 2년간 배정 제한

※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임금체불, 성희롱, 성폭력, 폭행 등)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주의서(불임 5) 발부 후 미조치 시 **다음연도 배정 인원 감소 및 제외 처리**

IV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임금 : 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급
※ 2027년 최저임금 고시에 의함(정부 최저시급 10,700원) / 일당 85,600원
- 근로시간 : 1일 7~8시간(1일 최대 10시간 이상 근로금지)
※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
- 연장·휴일 근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시간당 1.5배 이상 가산 권고)
- 야간(오후10시~익일 오전6시) 근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권고,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최소 임금 보장

- 근로개시 전 또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구인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연도별 최저 임금 변동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
 -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여 휴식 부여, 지자체는 교육, 마약검사 등을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서명·교부 확인 후 근로 개시(숙식은 입국 즉시 고용주가 제공, 임금은 근로개시일부터 산정)
- 근로계약서는 상호 서명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자 보관

○ 휴식 및 휴일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 부여

-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필수 준수사항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100분의 50,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 이상을 가산(권고)하는 등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 휴일 근로시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1회 또는 월4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해야 함
- 공공형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60~62조 참고)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노동절(5.1.)은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사업장(농·어업)은 노동절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연장·휴일근로 50~100% 가산 지급 대상은 아님)
- ※ (5인 이상 농어업사업장) 소정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인 근로자가 5.1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수당(8시간)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8시간 근로시 총 16시간의 임금 지급

○ 임금은 한국 화폐로 직접 외국인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에 따른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
-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을 별도로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 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 임금수령증은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가족, 중개인 등)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6.2.15. 시행)」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가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소 임금 보장 : 체류기간 중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 최소임금 보장

-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

○ 숙 소 : 배정받은 농장주 및 초청 결혼이민자가 제공

-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 임금의 8~20% 범위내 징수
 -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실제 임차료 등)의 금액을 징수 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 ※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여 각자 보관

(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 고용주와 근로자는 원본 보관, 지자체는 사본 보관(외국인등록시 사본 제출)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3식 모두 제공시)	월 통상임금*의 20%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통상임금의 15%	월 통상임금의 8%

V

금후계획

- 도입의향서 제출(시→출입국사무소→법무부) '26. 9월 중
- 수요조사 결과 접수(읍·면·동→시) '26. 10. 7. 한
- 지자체 선정 및 인원 배정(법무부→시) '26. 12월 중

-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 1부.
2. 고용농가 계절근로 수요조사 및 숙소점검 확인서 1부.
3.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1부.
4.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별점 부과 기준 1부.
5. 고용주 준수사항 주의서 1부.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 농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실 경작면적 기준(자경·임차)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꽃감 가공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100점 미만	100점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 작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 참외, 수박, 메론,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 쌈채소 등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양송이버섯 등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배, 포도, 블루베리, 자두, 대추, 복분자, 오디 등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배추, 무, 고추, 대파, 쪽파 등
⑤ 콩나물, 종묘재배	콩나물,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등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⑨ 꽃감 가공	꽃감

[붙임 2-1]

2027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수요조사서

신청자 (고용농가)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대표자 :)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농작업 내용	농지 소재지	외 필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작물	주 재배작물 기재		재배면적(㎡)	
	작업내용	자세한 작업내용 기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계획					
고용 희망 기간 (최대 8개월)	2027. . . ~ . . . [8개월(E-8비자)]				
고용 희망 인원	—명 (남 00명 / 여 00명) ※ 성별 변경 가능	도입방법 (택1)	☐ 결혼이민자 친척	☐ MOU협약	
결혼이민자 매칭 희망 여부	여 / 부 ※ '부'의 경우 [결혼이민자 성명/연락처 :]				
임금 지급 형태	임금	최저임금에 따름			
	지급방법	외국인 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비 공제 비율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최대 8 ~ 20%범위 내 징수			
주거시설 현황	숙소 소재지	주 소 : (택1) 임대/자가			
	건물현황	방 개수		면적(㎡)	
		화장실 및 온수 시설 구비여부	여 / 부	침구·식기류	여 / 부
				소화기	여 / 부
			화재감지기	여 / 부	
위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각 숙소별 점검 확인서(건축물대상 등 첨부)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1부. 4.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8세 미만 자녀, 65세이상 세대원 해당) / 해당시 6. 등기부등본 사본(법인 해당) / 해당시				

[붙임 2-2]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

- 점검자 : 읍면동 직 홍길동
- 점검일시 :
- 점검대상 : 정읍시 읍면동 길번 김○○(000-0000-0000)
- **숙소 주소 : 정읍시 읍면동 길번** ※ 도로명 주소 기재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2	주거종류	아파트, 주택, 회관 등 기재	
3	냉·난방 설비		
4	온수 샤워시설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6	침구류 및 식기류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숙소일 경우)	해당없음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특이사항

-

첨부 : 숙소 사진

○ 숙소 사진(○○읍면동 농가주 : 홍 길 동)

건물 전경(全景)	방
화장실	샤워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내부 잠금장치

[붙임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I 근무조건

- ① 휴일 : 한 달에 4일(농가-근로자간 협의)
※ 작물 특성 상 비오는 날 작업이 어려운 경우 ⇒ 휴일로 대체 가능
- ② 근로시간
 -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하여 1일 10시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제외)
예) 09:00 출근, 점심시간 1시간 부여시 ⇒ 09:00 ~ 18:00
07:00 출근, 점심 및 휴게 총 2시간 부여시 ⇒ 07:00 ~ 17:00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③ 최소 임금 보장 및 지정 근무지 준수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근로계약한 고용주 농가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출입국 허가 없이 **타고용주의 근무지에서는 고용 불가능**
⇒ 고용주 변경시 :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처변경허가 必
※ 위 조건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소 200만원 ~ 1,000만원**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됨.
- ④ 무단이탈 : 무단이탈 즉시 정읍시 농촌인력지원팀(☎063-539-6182,6184)으로 신고

II 급여조건

- ① 초과급여 및 휴일근무
 - 근로계약서 이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 시 추가 근로 시간만큼 근로자에게 지급
 - ② 산재보험 : 월 급여의 2.1% 금액을 고용주가 부담 후 체류기간 만료 시 정읍시에서 지원
 - ③ 월 급여(「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 월 실제근로시간
※ 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
- 농가에서 숙박 시 :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와 합의 후 공제금액 산정**
-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급여 지급 예시 >

- ▶ 농가에서 숙식을 하여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
: 월 급여(2,240,000원) - 숙박비(100,000원 ~ 300,000원) = 2,140,000원 ~ 1,940,000원
- ▶ 결혼이민자의 집에서 출퇴근 하거나 숙식비 공제를 안하는 경우
: 월 급여(2,240,000원) - 공제 0원 = 2,240,000원

III 협조사항

- 근로자 관리 목적으로 정읍시에서 불시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 고용주 대상 교육 참석의무
 - 계절근로 제도,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 외국인등록 관련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등록 단체 접수는 농번기(4~6월) 입국·접수한 근로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 단체 접수 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까지 최장 3~4개월의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 불가능
-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침구류, 취사도구, 와이파이, 소화기 등의 필수 시설·물품을 구비하여 함(**불법건축물 숙소 제공 금지**)
-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 MOU협약 방식으로 유치 신청하여 송출국 배정요청이 완료된 후 단순 변심으로 유치 취소한 경우 법무부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초청자 수요(결혼이민자 초청 매칭) 및 본국 행정 절차(MOU협약 초청) 등에 의해 입국일이 지연될 수 있음

고용주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법무부로부터 벌점이 부여되거나 정읍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주의서가 발부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됨**.
“여러분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고,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준수사항 불이행 시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고용주 : (서명)

정읍시장 귀하

[붙임 4]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

위반 및 개선 사항			벌점	비고
부적합 숙소	①	필수시설·물품 미구비	5	①,② 모두 해당될 경우 10점 부과
	②	부적합숙소 확인 시	10	
	③	10일 이내 미개선	20	미개전시 고용주 재배정
과도한 숙식비 징수	④	주거유형에 따른 공제 상한액 미준수	10	과다공제금액 반환 조치 병행
	⑤	숙소시설표 및 숙식비 공제 동의서 미교부	5	즉시 시정
법정 의무보험 미가입	⑥	가입기한 초과	5	※ 미가입 확인 시 즉시 가입 조치하고 적발 후 5일 이내 보험 미가입시 고용주 재배정
	⑦	미가입	20	
최저임금법 위반, 각종 수당 미지급	⑧	즉시 시정	10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미달, 임금 전액 미지급(일부지급) 등 ※ 적발 후 5일 이내 미시정시 노동청 고발 및 고용주 재배정
	⑨	미시정	20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⑩	7일 이내 지연 지급	5	최저임금, 수당 등 임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늦게 지급한 경우(임금명세서 등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 지연기간횟수에 따라 벌점 부과 ※ 임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⑧ ⑨ 적용 ※ 적발 후 5일 이내 미시정시 노동청 고발 및 고용주 재배정
		7일 초과~30일 이내 지급시	10	
	⑪	30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	
임금 최소보장 기준 미준수	⑫	즉시 시정	10	월 153시간 이상 미지급 시 ※ 적발 후 5일 이내 미시정시 고용주 재배정
	⑬	미시정	20	
휴게, 휴일 미보장	⑭	확인 시	5	주1회 또는 월 4회 이상 휴일 부여 의무 미준수 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미교부	⑮	확인 시	5	임금 현금지급 시 수령증 미비, 근로시간 기록이 없는 경우 포함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 고용변동 미신고 등	⑯	확인 시	5~20	출입국관리법 위반 경중에 따라 각 출입국관서에서 벌점 부과 ※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초청 20점, 단순착오 등 고의성 없는 경우 5점
이탈자 누적 수	⑰	확인 시	5~20	고용주 귀책 사유 없는 경우 벌점 미부과 ※ 이탈인원당 5점(최대 20점)
인권침해 등	⑱	폭언·폭행(경미한 경우)	10	고용주 재배정 등 사안별 결정(사안별 벌점 부과) ※ 인권침해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고용주 재배정
		폭행·상해	20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30	
		통장, 신분증 압수	10	
		외부연락, 외출 금지 등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⑲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시	60	고용주 재배정
		5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 선고시	60	
기타 지시 불이행	⑳	①~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고용주 교육 미참여 등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포함

[붙임 5]

주 의 서

고용주			생년월일	
주의서 내용	<위반내용> 예시) 해당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 고용주 준수사항에 따른 임금 지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어 주의를 조치 하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주의서를 받은 고용주는 별도로 통지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법무부 통지가 이루어지며, 일정기간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및 초청인원 감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수령확인				
고용주	(서명)		연락처	
주의서 발부자	소 속	농업정책과	직 위	농촌인력지원팀원
	성명	(서명)	연락처	

※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용주에게 현장에서 교부, 1부는 정읍시에서 보관

끝.